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급식지원을 위한 인력과 예산 요청 근거 신설〉

■ 정희용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856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희용 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6. 3. 30.
3. 회부연월일 : 2026. 3.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생들의 아침 결식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과 함께 비용을 부담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현행법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학의 재정난이 가중되며 사업비를 부담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학이 늘어가고 있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국가가 대학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학의 장이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추가로 인력과 예산 지원

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재정난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
권 및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대학의 장이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과 예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의2(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 (생략) <u><신설></u>	제8조의2(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u>대학의 장은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u>

2. 검토의견

- 현행 「고등교육법」 제8조의2¹⁾는 학생의 건강관리 및 급식지원에 관한 국가의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근거로 아침식사 결식률²⁾이 높은 청년층(대학생)에게 아침밥을 제공하여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고, 쌀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동 사업은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1식 기준 1,000원의 가격으로 아침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6년 기준 총 220개교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26년 예산으로 111억원이 편성되었음.

< ‘천원의 아침밥’ 사업 연도별 지원현황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학교수	14개교	26개교	28개교	144개교	190개교	208개교	220개교
지원식수	12만식	35만식	49만식	233만식	393만식	496만식	540만식
예산	3억원	5억원	6억원	24억원	81억원	97억원	111억원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아침 식사 1끼 기준, 약 4~7천원의 아침식사를 학생에게 천원의 가격으로 제공하며, 남은 비용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대학에서 부담

1) 「고등교육법」 제8조의2(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령별 아침식사 결식률>

연령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결식률(%)	35.5	62.1	46.8	39.1	25.3

하도록 하고 있음.

<‘천원의 아침밥’ 비용 지불 구조>

총 식사제공 소요 비용 : 4,000원 ~ 7,000원			
1,000원	2,000원	1,000원 ~ 2,000원	1,000원 ~ 2,000원
학생 부담	정부 (농림부 예산)	지방자치단체(자율)	대학교(자율)

- 동 사업은 정부 예산(농림축산식품부 ‘천원의 아침밥’ 사업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통해 지원되고 있으나, 대학별로 자체 부담금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일부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재정난을 겪고 있어 대학별 자체 부담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등 해당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음.
- 이에 개정안은 대학의 재정난으로 인하여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지원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교육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요청에 따르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대학의 부족한 인력과 예산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지원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 다만, 동 개정안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지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의 사업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점을 고려

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먼저, 교육부는 (전문)대학혁신지원 사업의 집행기준을 완화³⁾하여 각 대학에 지원하는 일반재정지원사업비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일반재정지원사업비를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대학의 요청에 따라 별도의 인력과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기존 재정지원 체계와 중복될 우려가 있음.

- 다음으로, 신설되는 안 제8조의2제2항은 사실상 의무규정으로 국가의 예산 지원이 의무지출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함. 안 제8조의2제2항 후단 규정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실상 대학의 요청에 따른 예산과 인력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대학은 중·고등학교와 달리 등록금, 자체 수입 등으로 운영되는 자율적 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 사업은 대학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고, 대학의 요청에 따른 국가의 예산 지원을 사실상 의무화할 경우 지속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하고 다른 재정수요를 고려한 탄력적인 재원 배분이 어려워지는 등 국가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3)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일반재정지원사업비는 사업비 비목이 정해져 있어 대학이 통상적으로 수행해 온 일반적인 목적의 업무, 경상경비는 기존 교비를 활용하여 수행하여야 하나,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일반재정지원사업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기준을 완화하였음.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관계기관 의견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대학생의 급식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현행 「고등교육법」 제8조의2에 따라서도 인력 및 예산 요청이 가능하며 예산 요구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기획예산처는 개정안은 현행 임의 규정을 사실상 의무 규정으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대학의 책임성을 약화하고 타 복지 수요와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193